##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22

발의연월일: 2021. 7. 5.

발 의 자 : 변재일 · 고용진 · 윤영찬

이용빈 · 이장섭 · 이정문

임호선 · 조승래 · 한준호

홍성국 · 홍익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이 구분되어 있고, 사업별로 전송방식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전송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함. 전송기술의 선택과 활용이 제한됨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등 기술 혁신이 어렵고, 경쟁력제고에 한계가 있음

이에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9조의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① 종합유선방송사
	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
	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u>할 수 있다.</u>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
	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
	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
	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
	라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u>다.</u>